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동아리 운영세칙

2018년 11월 27일 제 정

2020년 9월 16일 일부개정

2025년 9월 11일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에 등록된 동아리(이하 “동아리”)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아리에 대한 지원과 동아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회”라 함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말한다.
2. “회원”이라 함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회원을 말한다.
3. “대의원총회”라 함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대의원총회를 말한다.
4. “운영위원회”라 함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동아리의 의의) 동아리는 회원 가운데 일정한 목적을 좇아 10인 이상이 함께 결사하여 구성한 모임이다.

제4조(자치보장) ① 동아리는 회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사로써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독립하여 결정한다.

② 본회는 동아리의 자치활동을 보장한다. 동아리는 이 세칙에 의하여 본회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동아리의 의무) ① 동아리는 대의원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제정된 회칙, 세칙, 규칙 등의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동아리는 그 활동과 운영을 함에 있어 성별, 종교, 출신 그 밖의 이유로 회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동아리는 정관(定款) 또는 설립의 목적을 좇아 성실하게 활동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모든 동아리에 적용한다.

제2장 동아리의 등록절차와 목적변경

제7조(등록자격) ①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단체는 동아리가 될 수 있다.

1. 소속된 학과를 서로 달리하는 회원 2인 이상이 속하는 단체
2.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